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241
----------	-------

발의연월일 : 2023. 9. 5.

발 의 자 : 변재일 · 박홍근 · 윤준병
박완주 · 정태호 · 정필모
서영석 · 양정숙 · 양향자
윤영찬 · 윤미향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원활한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지역 주민의 환경·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또한 특정지역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편중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함.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 다.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 라.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란 폐기물처리시설(그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추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장의 제목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3장의2(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26조의2(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신고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단,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와 인접한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고시의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

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③ 부담금 및 가산금, 연체이자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6조의3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 및 가산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업자”란 <u>폐기물 처리시설(그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추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u>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u> <u>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u> <u>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u>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지원 등

<신 설>

<신 설>

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폐
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3장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
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26조의2(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신고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이하 “민간 폐기물처리시
설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때에

<신 설>

는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단,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와 인접한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고시의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

<신 설>

(이하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③ 부담금 및 가산금, 연체이자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6조의3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부담금 및 가산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